

「국고금 취급규정」 주요 개정내용

I 개정 필요성

- 당행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**부서 명칭을 변경**하는 한편, 중복된 용어 등을 정비
- 금융기관이 **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**로 국고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재조치(주의환기 등)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 변경
- 국고전산망 **추가연계기관(국고금수납점)에 은행이 추가됨에 따라** 업무 프로세스 정비

II 주요 개정 내용

1 부서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

- 부서명칭 변경
 - 전산정보국장 → IT전략국장
 - 국고증권실장 → 금융업무실장
- 용어 정비(제2조)
 - 현행 규정상 **국고수납대리점**에 대한 용어정의가 금융기관 및 중앙회 등으로 **이원화**되어 있어 이를 **중앙회** 등으로 **통일**할 필요

○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한 정의* 신설

* 「국세징수법」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

②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기준 추가(제11조)

□ 금융기관(결제모점 포함)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*한 경우에도 당행이 주의환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 변경

* 현행 규정에는 금융기관이 '국고금 취급규정 또는 동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이나 지시를 위반'한 경우에 한해 주의환기 및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③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 확대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정비(제16조, 제19조, 제28조)

□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(국고금수납점)에 은행이 추가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국고금을 당행이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경우 입금방식을 전산시스템 운영방식에 맞춰 변경*

* 중앙회 산하 회원조합(농협, 수협, 산림조합 등)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 등으로, 회원조합이 은행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으로 입금

□ 국고금 지급업무는 국고금 수납업무의 안정성이 검증된 참가기관(국고수납대리점)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고금수납점도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

□ 은행이 회원조합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국고전산망 운영시간이나 참가기관의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적용*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
* 제20조제2항, 제24조

Ⅲ 시행일

시행일 : 2023. 8. 18.